

『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(里)에 걸쳐지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교리 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안 제2조의 별표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변경함(안 제2조).

- 선산읍 교리 일부(26필지 14,979㎡) → 선산읍 동부리 편입
- 선산읍 동부리 일부(13필지 6,643㎡) → 선산읍 교리 편입
- 선산읍 동부리 일부(2필지 872㎡) → 선산읍 화조리 편입
- 선산읍 화조리 일부(15필지 9,181㎡) → 선산읍 교리 편입
- 선산읍 화조리 일부(3필지 351㎡) → 선산읍 동부리 편입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2항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(里)에 걸쳐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교리 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안 제2조의 별표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임(안 제2조).

- 선산읍 교리 일부(26필지 14,979㎡) → 선산읍 동부리 편입
- 선산읍 동부리 일부(13필지 6,643㎡) → 선산읍 교리 편입
- 선산읍 동부리 일부(2필지 872㎡) → 선산읍 화조리 편입
- 선산읍 화조리 일부(15필지 9,181㎡) → 선산읍 교리 편입
- 선산읍 화조리 일부(3필지 351㎡) → 선산읍 동부리 편입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의 규정에 따라 리(里)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